
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사항

■ 편의제공 대상

- 해당 채용전형 응시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해당전형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람

■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결과 안내

- 편의제공 신청서에 장애유형·정도, 편의제공 신청 사항 등을 작성 제출
 - 입사지원서 제출 시,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의사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
 -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편의제공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, 안내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자 대상 승인 여부 별도 안내 (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등 개별 안내)

■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

- '(참고)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증빙서류'를 통해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필요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
 - ※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의사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-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

■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(필기전형)

장애유형 및 등급			필기전형 편의지원 내용
지체장애	상지	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확대문제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원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		1~3급(중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시험 답안지 대필
		4~6급(경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
	하지	1~6급(중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뇌병변 장애	공통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확대문제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원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	1~3급(중증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시험 답안지 대필
	4~6급(경증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
시각장애	공통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확대문제지, 보조공학기기 지원 허용
	1~3급, 4급 2호 (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자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
	4,5급 1호,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 이하 (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자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
	5급 2호, 6급 (위 조건 이하의 자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
청각장애	2~6급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원 허용
기타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장애	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
	등급 구분 없음 (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, 신장, 심장, 장루, 요루 장애 등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· 장애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
기타	임산부 (의사소견서 증빙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
○ 신청방법

- 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
-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표시(보조 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한 보조기기에 한함)
- 원서 접수 후 편의제공 여부 별도 통보함
-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로 확대 인쇄 제공
-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
※ 상기의 사항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결정

■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(면접전형)

장애유형 및 등급			면접전형 편의지원 내용
지체장애	상지	공통사항	·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·도우미 지원 ·시험시간 연장
		1~3급(중증)	·공통사항
		4~6급(경증)	·공통사항
	하지	1~6급(중증)	·공통사항
뇌병변 장애	공통사항		·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·도우미 지원 ·시험시간 연장
	1~3급(중증)		·공통사항
	4~6급(경증)		·공통사항
시각장애	공통사항		·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·도우미 지원 ·시험시간 연장
	1~3급, 4급 2호 (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자)		·공통사항
	4,5급 1호,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 이하 (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자)		·공통사항
	5급 2호, 6급 (위 조건 이하의 자)		·공통사항
청각장애	2~6급		·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·도우미 지원 ·시험시간 연장 ·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
기타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장애	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	·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
	등급 구분 없음 (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, 신장, 심장, 장루, 요루 장애 등)		·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·장애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 실 사용 허용
기타	임산부 (의사소견서 증빙)		·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

○ 신청방법

- 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
 -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표시(보조 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한 보조기기에 한함)
 - 원서 접수 후 편의제공 여부 별도 통보함
- ※ 상기의 사항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결정

■ 편의시설 확인사항(별관 강의실_예정)

체크항목	확인여부
1.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구비	완료
2. 고사장(필기 및 면접장) 진입 시 단차 없음	완료
3. 고사장 1층 배정	완료
4. 복도 바닥의 미끄럼 여부 및 장애물 제거	완료
5. 장애인용 화장실 구비	완료
6.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높이에 맞는 정수기 및 접수대 구비 여부	완료
7. 고사장 장소 표시 여부	준비예정
8. 면접 대기 장소에 충분한 의자 구비 여부	완료
9. 면접장소 접근이 어려울 경우 대체 장소 여부	완료

■ 발급기관 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-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의사진단서가 아닌 의사소견서,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
- 다만, 임신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

■ 발급일자 :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(※시각장애인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)
-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신청 하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 -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 -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신청할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
<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장애 유형	장애 정도	예시	※ ①~③ 반드시 기재
시 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인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- 시력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	※ ①~③ 반드시 기재
뇌병변장애인	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인의 경우,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-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-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	

채용 편의제공 신청서

공 고 명		시험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필기시험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접시험
성 명		전화번호 (보호자는 필요시 기재)	응시자: 보호자:
수험번호			
주 소	(우편번호:)		
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신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일시적 장애 등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<상세기술></div>		
첨부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증명서(응시접수 마감일 1개월 이내 발급) <input type="checkbox"/> 의사 진단서(응시접수 마감일 2년 이내 발급) ※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(등기우편 도달기준)		
편의 제공 요청 사항	시험시간 연장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필기시험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접시험	
	장애인 보조기구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기구 명칭(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필요사항()	
	기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화통역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서면 자료 제공	
※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

건설기술교육원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성명

(서명 또는 날인)

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장 귀중